

##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임동원 /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dwlim@fki.or.kr)

현재 소비자와 기업의 체감경기가 어렵고 인구위기와 성장 둔화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과세체계 정비가 필요한데, 2024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세제 개편으로 민간·기업·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특히, 기업경쟁력 제고 및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소 소극적인 정책으로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기업세제가 인센티브 역할을 해야 하는데 법인세율 인하나 R&D 및 투자 세액공제의 대폭 확대 등이 없이 국가전략기술 등 R&D·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정도의 정책에 그쳤기 때문이다. 기업의 지속성장에 주요 장애물인 상속세 부분에서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의 합리적인 정책이 개정안에 포함된 점은 다행이지만,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부분에서는 대기업이 제외되어 기업 입장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상속세 부담보다는 높은 편이다.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는 세수증대보다는 인력 및 자본 유출 등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 밸류업, 상속세제 합리화 측면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추가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개편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및 투자 유치를 도모해야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며 직접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주주환원 촉진세제에 추가적인 배당 촉진 방안으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소득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면 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두 번째, 상속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상속세율 인하 및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 개정안 40%)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5개(개정안 4개)에서 3개로 줄여야 하며,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공익활동의 증대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2000년대 이후 기부금 세제지원 은 축소되고 공익법인 규제는 강화되는 등 기부 관련 소극적 조세정책이 이어져 오고 있어 법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공제 확대, 공익법인 관련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 법인 기부금의 법인세 손금산입 한도를 2005년 이전으로 원상복귀(특례기부금 기준 50%→100%)하고, 기부 및 기업승계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 여력과 재원이 큰 기업집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한도를 발행 주식총수의 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 1. 검토 배경

□ 7월 25일 정부는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에 역점을 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촉진, 기업경쟁력 제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결혼·출산 지원,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을 개정안에 포함했음

- 경제 역동성 관련 주요 개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등 R&D·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대상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있음

- 민생경제 회복 관련 주요 개정안으로 결혼세액공제 신설,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이 있음

○ 또한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를 추진했는데, 이중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가 이뤄졌음

- 물가·자산 변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10%p 인하하고, 과세표준구간을 1개 축소했으며,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음

□ 우리 경제는 소비자와 기업의 체감경기가 어렵고 인구위기와 성장 둔화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해야 하므로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과세체계 정비가 필요한 상황

○ 특히, 기업경쟁력 제고 및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소 소극적인 정책으로 대응한 것으로 판단됨

○ 기업의 지속성장 측면의 주요 장애물인 상속세 부분에서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의 합리적인 정책이 개정안에 포함된 점은 다행이지만,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부분에서 대기업이 제외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모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상속세 부담보다는 높음

□ 계속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기업 더 나아가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기업 관련 내용 중심으로 분석 및 평가하려 함

## 2.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2024년 세법개정안의 정책 목표는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이고, 추진 전략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제의 역동성 지원]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원활한 기업승계, 자본 선순환 구조 구축 등을 지원하여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경제의 역동성 강화

○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함

<표 1>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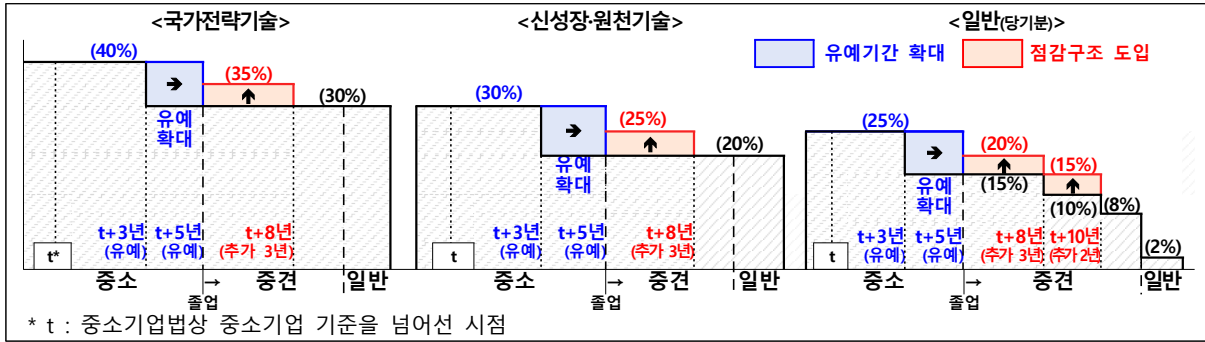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구분(%)	기본			추가*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3	일반	1	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3	6	1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15		25	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15		25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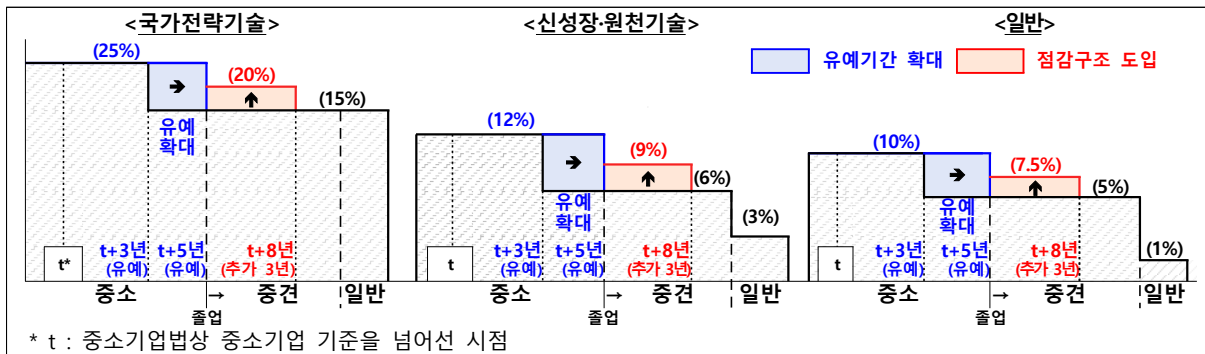
- R&D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점감구조<sup>1)</sup>를 도입

<그림 1> R&D 세액공제 개정안

1) 중소-일반기업간 공제율 차이로 인해 기업 성장시 공제율이 큰 폭으로 축소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을 졸업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높은 공제율 적용.



<그림 2>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안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

\*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 7년 100% + 3년 50% 감면  
 수도권 안으로 부분 복귀: 3년 100% + 2년 50% 감면

\*\* 완전 복귀: 100%, 부분 복귀: 50% 감면

○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 한도 상향 조정

- (대상 확대)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중소기업·중견기업 전체(대기업 제외)

- (공제한도 상향) ①밸류업, ②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공제한도 2배 확대\*, ③기회발전특구<sup>2)</sup> 창업·이전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 가업영위기간 10년/20년/30년 이상: 300/400/600억원 → 600/800/1,200억원

<표 2> 가업상속공제 확대기업의 세부 요건

2) 2024년 1차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는 대전 유성구(방산, 바이오), 전북특별자치도[전주(탄소섬유), 익산, 정읍(동물용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김제(자동차부품, 특장차)], 전라남도[목포, 해남(해상풍력 터빈), 광양만권(이차전지 소재), 순천(문화콘텐츠), 여수(LNG터미널, 수소), 해남(데이터센터단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우주항공), 경상북도[포항, 상주(이차전지 소재), 구미(반도체, 이차전지, 방산), 안동(바이오)], 대구광역시[수성구(데이터센터, ICT, SW), 달성군(이차전지 소재, 전기차 부품), 북구(전기차, 로봇 부품)], 부산광역시 동구, 남구(금융), 경상남도 고성(해상풍력 구조물) 등임.

구분	세부 요건 (기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필요)
밸류업 우수기업	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② 5년간('25~'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일 것
스케일업 우수기업	① 5년간('25~'29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이 아래 둘 중 하나를 충족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5% + 연평균 증가율 5%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3% + 연평균 증가율 10% ② 5년간('25~'29년) 고용을 유지할 것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	○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 - 기회발전특구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20% 할증평가 폐지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3년 한시)

- [법인세 세액공제]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 (요건) ①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②배당·자사주소각으로 ③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 \*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② 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 포함) + 자사주소각 금액  
③ 직전연도 대비 증가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증가

- (공제 대상 금액)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

- \*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

- (공제율) 5% (공제한도: 해당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 (적용기간) 2025.1.1. ~ 2027.12.31.(3년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

-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

- (대상 소득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text{분리과세 소득 금액 비율} = \frac{\text{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 \text{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times 10\%}{\text{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 (분리과세 세율) 분리과세자 14% → 9%, 종합과세자 최고 45% → 25%

- (적용기간) 2026.1.1. ~ 2028.12.31. 지급받는 배당금

○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지원 확대\*

- \*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1억원) → 연 4천만원(총 2억원)
- (비과세 한도) 200만원(서민형<sup>3)</sup> 400만원) → 500만원(1,000만원))

□ [민생경제 회복] 결혼·출산·양육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저출산 위험에 대응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

○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
- \* 2024.1.1.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 '24년~ '26년) 적용, 생애 1회 한정
-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 → 10년)
-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 공제금액(첫째 / 둘째 / 셋째, 만원): (현행) 15 / 20 / 30 → (개정안) 25 / 30 / 40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기업의 비용 인정)

-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한 경우(2회 이내)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 \* (현행) ~10만원: 전액, 10~500만원: 15% → (개정안) ~10만원: 전액, 10~2,000만원: 15%

□ [조세체계 합리화] 세부담 적정화 등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추진해 합리적인 조세정책 체계 구축

○ 세율 인하, 과세표준, 공제 금액 조정 등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10% 적용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3) 총급여액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또는 농어민이 가입 대상.

&lt;표 3&gt;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 가상자산 과세(기타소득, 20% 세율)는 시행시기를 2027년으로 2년 유예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을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 \* (현행)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 (개정안)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 3. 분석 및 평가

- 현 급변하고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기업 관련 조세정책방향은 기업경쟁력 제고 및 투자 유치 도모를 위해 설정되어 하는데,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은 기본방향이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조세체계를 합리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 다만,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기업세제가 인센티브 역할을 해야 하는데 법인세율 인하나 대폭적인 세액공제 확대 등이 없고 국가전략기술 등 R&D·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정도의 정책에 그쳐 실망스러운 부분임
  - 기업의 지속성장 측면의 주요 장애물인 상속세 부분에서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의 합리적인 정책이 개정안에 포함된 점은 다행이지만,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부분에서 대기업이 제외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모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상속세 부담보다는 높은 편임
  - 한편, 공익활동의 증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그 재원인 ‘기부’가 부족하므로 법인 기부 축진을 위해 현행의 규제지향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없음
- 기업 밸류업, 상속세제 합리화(중산층·기업의 상속세 부담 완화), 법인 기부 활성화 측면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더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논함

## 1) 기업 밸류업

□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우리 자본시장은 저평가가 지속되어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성장과 중산층의 자산증식에 미흡하다고 함<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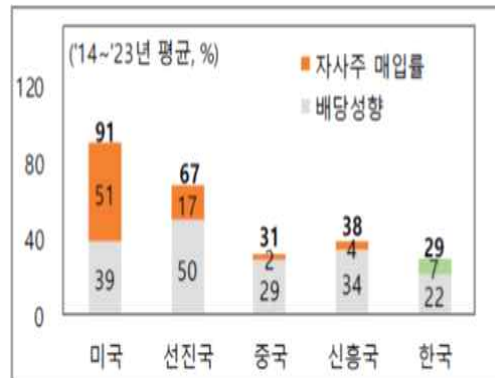
- 정부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이 낮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도 미미해 기업들은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업 세제지원 등 관련 인센티브 부족을 호소했고, 결과적으로 자산 부동산 편중 등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성장과 중산층 자산증식이 미흡하다고 평가됨

\* 전체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 , '22) : (한국)63.2 (미국)33.8 (일본)37.3 (영국)49.4

<그림 3> 주요국 ROE/PBR/PER<sup>5)</sup>  
(%/배/배, '14~'23 평균)

구분	한국	대만	중국	신흥	미국	일본	선진
ROE	8.0	13.6	11.5	11.1	14.9	8.3	11.6
PBR	1.0	2.1	1.5	1.6	3.6	1.4	2.5
PER	14.2	16.0	13.1	14.3	21.8	16.9	19.7

<그림 4> 주요국 주주환원율



자료: 관계부처 합동, “역동경제 로드맵”, 2024.7.3.

- 이에 정부는 세제지원, 지배구조 개선 등 밸류업을 가속화할 예정임
  - 세제지원 관련해서 주주환원<sup>6)</sup>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의 5%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sup>7)</sup> 저율 분리과세(14 → 9%, 최대 45 → 25%)를 도입하고,
  - 상속세 관련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한도를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임
  - ISA 지원 확대,<sup>8)</sup>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내 증시 투자 유인책도 있음

4) 관계부처 합동, “역동경제 로드맵”, 2024.7.3.

5) ROE: 기업이 자기자본을 이용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순이익/자기자본\*100),

PBR: 기업의 순자산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지표(주가/주당순자산가치),

PER: 기업의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지표(주가/주당순이익).

6) 밸류업 공시 기업의 배당 및 자사주 소각 등.

7)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



□ 기업 밸류업에 부정적 요인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은 크게 법인세와 상속세이며,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상속세 개편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및 투자 유치를 도모해야 함

○ 현행 법인세는 세율이 높고 다단계구조를 가지고 있어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이 부족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음

- OECD 38개국 중 절반에 달하는 18개국(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법인세율(최고세율)이 10년 전('13년) 대비 하락했으며, 12개국이 세율 유지, 한국 등 8개국만 법인세율이 상승했음<sup>9)</sup>

•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주요국 뿐만 아니라, 중국(25.0%), 대만(20.0%), 싱가포르 (17.0%), 홍콩(16.5%) 등 아시아 경쟁국가들도 상회

- 특히, 주요 산업 관련해 미국, 대만의 경우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해 25%의 세액공제가 포함된 법안이 시행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K칩스법(2024년 일몰 예정)' 만 3년 연장하기로 해 시의적절한 대응이라 할 수 없음

⇒ (개선안 ①)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 기업경쟁력 제고 및 투자 유치 도모

- 2022년 말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되었지만, 여전히 주요국 대비 최고세율이 높아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자본의 국내 유치에는 한계

• 만약 미국의 트럼프가 재집권 시, 법인세율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으며 한미 법인세율 격차가 더 벌어져 한국의 자본 유치 경쟁력이 지금보다 더 위축될 우려<sup>10)</sup>

- 법인세율을 최고세율 기준 24% → 21%(중앙정부 기준)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은 4 → 2단계로 단순화<sup>11)</sup>

⇒ (개선안 ②)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고 직접 환급제도를 도입해 보다 실효적으로 지원해야 함<sup>12)</sup>

-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0~2% → 10%로 확대<sup>13)</sup>

-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특례의 항구화 필요

8) ISA 납입/비과세 한도: 연간 2천만원/200 → 연간 4천만원/500만원.

9) 한국의 법인세율 순위는 '13년 OECD 23위에서 '23년 OECD 11위까지 상승 (OECD 평균 23.6%).

10) 7월 트럼프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최대 15%까지 법인세율을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

11) 중소기업(2억원 이하)의 경우 9%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2~200억원은 15%, 200억원 초과는 21% 적용.

12) 임동원,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R&D 세제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24.7.

13) 대기업도 '매출액 대비 R&D 비율'로 공제율을 규정하지 않고, 중견·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정률의 공제율을 적용해 경기 변화에 따른 R&D 공제율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 중견기업은 15%로 확대.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도(Direct Pay)<sup>14</sup> 도입
    - 우리나라도 국가전략기술에 한해 직접환급방식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면 직접보조금 효과와 유사하게 국내투자 확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현행 상속세는 세율이 매우 높으며 최대주주할증평가, 기업승계지원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의 불합리한 요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
    - 상속세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쉽게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기에,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를 높일 유인이 사실상 없기 때문임
    - 관련하여 최고세율 10%p 인하,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고, 추가적인 세율 인하와 과세방식 변경 등 자세한 개선사항은 다음 절(상속세제 합리화)에서 논함
  - 이번에 도입되는 주주환원 촉진세제(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재설계하고 추가적인 배당 촉진 방안으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소득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는 개편이 필요
    - 주주환원 촉진세제 중 법인세 세액공제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의 5%를 초과 증가분에 대해서 5%의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배당확대를 유인하기 부족하므로, 5% 초과분이 아닌 ‘단순 증가분’에 ‘10%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재설계할 필요
    - 2015년부터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운영해 대기업이 ①투자, ②임금 증가, ③기업 간 상생협력 지출로 사용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세율 20%)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그 취지인 기업 투자와 임금 증가를 촉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중과세로 인한 세부담 가중으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법인세를 이미 납부한 후의 기업 소득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투자와 임금 증가를 촉진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세수를 보면 ‘기업의 소득이 투자 또는 임금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유도’ 한다는 제도의 목적과 달리 ‘세수’만 증대되고 있음
- \* 산출세액: '18: 7,191억원, '19: 8,544억원, '20: 10,658억원, '21: 11,857억원, '22: 13,338억원.

#### <그림 5>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실효성 분석

14)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생산량 또는 투자액에 비례해서 ‘현금환급형 세액공제(Direct Pay)’ 제공, 세액공제임에도 사실상 직접 현금보조금과 같은 역할을 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화할 수 있음.

설명변수	종속변수			
	투자		임금 증가	
	계수추정치	t-value	계수추정치	t-value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 여부	-0.0098 ***	-3.20	0.0000	0.03

주): \*\*\* 표시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실효성 분석” 2022.10.

- 특히, 기업이 이익 환원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 등 주주들의 배당확대 요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인 배당이 필요한 상황에서, 배당으로 실제적인 현금 유출이 있음에도 환류 항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함
- 기업의 소득 환류를 유도할 목적으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나라는 현재 미국, 일본, 대만 정도에 불과하며, 이들 국가는 기업이 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함으로써 개인주주가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 (개선방안) 1안으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연장하지 않고 2025년에 일몰 종료하거나, 2안으로 제도 유지 시에는 배당을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포함하여 불합리한 세부담을 완화해야 함
  - 배당은 기업의 소득을 주주에게로 이전함으로써 소득 선순환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환류 방식이므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상 기업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배당은 2017년까지 기업소득 환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8년에 세법개정으로 환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제도 도입 후 배당이 환류 방식에 포함되었던 2017년까지 3년 동안, 제도 시행과 배당증가 간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됨<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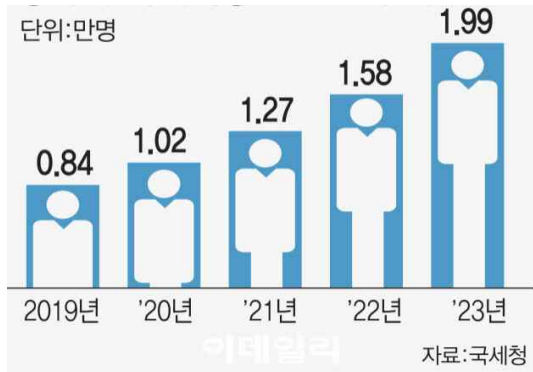
## 2) 상속세 합리화 (중산층과 기업의 상속세 부담 완화)

- 상속세 관련 세제개정에는 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 확대,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등이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 하에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상속세 부담보다 높은 수준임
- 상속세 자녀공제가 1인당 5억원(현재 5천만원)으로 확대된 점은 급격히 증가된 중산층의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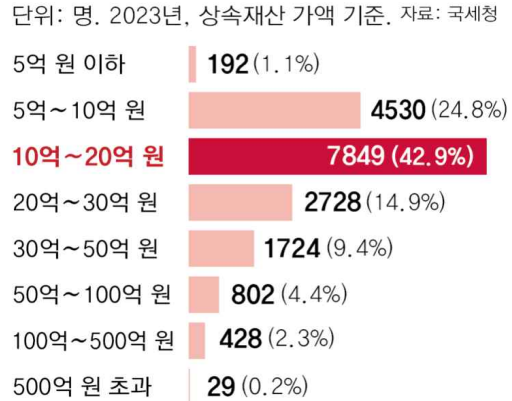
15) 한국경제연구원,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실효성 분석” 2022.10.

- 부담 완화에 도움될 것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어 상속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상속세율의 추가 인하가 필요함
-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등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했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공제한도도 밸류업, 스케일업 기업에 한해서만 2배로 확대되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됨
  -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에 대해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그 적용대상이 지극히 제한되는 점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로 10%p 인하되고, 과세표준 구간도 4개로 1개 줄었지만, 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 약 26%보다 높은 수준이고, 유산세 과세방식도 변화가 없음
- 사실상 세계 최고 상속세율(약 60%)로 적용되던 주요 원인인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된 점과 최대주주할증평가가 폐지된 것은 상속세제의 합리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임
- 현재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은 24년째 그대로이지만 상속세 과세인원은 20년 전보다 약 12배 이상 늘어 중산층도 그 대상이 되고 있고, 과중한 상속세는 기업의 지속성장에 조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상속세는 2000년 최고세율을 5%p 높인 후에 큰 변화가 없었고 소득과 자산이 24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인원은 19,944명으로 2003년(1,720명)보다 약 12배 이상 늘었으며 전체 피상속인 중 상속세 과세인원 비율이 5.7%가 되었음(2003년 0.76%)
- 1년 전보다 사상 최대로 4,184명(26.5%)이 증가했고, 상속재산 가액을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를 신고한 인원이 7,849명(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1인당 평균 납부액은 7,448만원이었음
  -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고액 자산가들만 내던 상속세가 20년 새 중산층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된 것임

&lt;그림 6&gt; 상속세 과세인원 추이



&lt;그림 7&gt; 상속재산 규모별 신고 현황



- 우리나라는 2000년 상속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을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2000년대 들어 스웨덴(2005년), 체코(2014년) 등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였고 상속세를 완화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
  - 상속과세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인식 하에 자본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에 보다 유용하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15개국은 폐지 또는 미도입<sup>16)</sup>
  - OECD 회원국 중 상속세 부과 국가는 23개국,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5개국인데, 상속세 부과 23개국 중, 직계비속에게 상속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국가는 14개국이며 이 중 5개국은 상속세 면제
    - 최근 영국에서는 상속세(40%의 세율)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 상속세도 자산가격 상승 등 지난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데, 현행 상속세제 하에서는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
  - 상속세가 차지하는 전체 국세 비중(약 2.1%, 2022년 기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강화된 상속세를 24년째 유지해 실질적인 세부담이 커졌음
  - 해외에서는 상위 1, 2%만 부담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집 한 채만 가진 중산층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되어 재고가 필요한 상황
    - 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으로 볼 때, 2017년(6억원) 상속세가 900만원대였다면, 2024년(13억원) 기준 1.7억원 정도 부담할 것임
- 결국 상속세의 중(重)과세는 조세수입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가계의 자산 형성 및 이전을 막고, 기업에 과도한 세부담을 주기 때문에 상속세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

16)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주로 피상속인의 미실현된 자본이득을 상속인이 처분할 때 과세하도록 이연함.

- 기업의 경우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 재투자보다는 기업자산 매각 또는 배당 증가를 할 수 밖에 없으며, 기업의 성장동력 및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기 때문에 개편될 필요가 있음
- 2023년까지 23년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부분의 경우, 세율 인하, 과세방식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제외되어 있었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세율 10%p 인하가 포함되었지만 고령화 등 사회환경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는 상속세로 더 개편되어야 함

□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과 관련해서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2위이고, 2022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1위로 국제적 비교 측면에서 매우 과중한 수준임

-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평균 최고세율 약 26%의 2배에 달하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를 적용하여 과세,<sup>17)</sup>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적용시 최대 60%의 세율처럼 적용될 수 있음
  - 2022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7%로 OECD 국가 중 첫 번째로 높음(벨기에, 프랑스와 공동 1위)
- 상속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해 보면 일본(100%) 다음으로 2위(95%)인데,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소득세 과세대상이었던 소득이 누적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중과세 측면에서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그 반대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2위, 소득세 11위로 모두 높음
  -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계속 올려 세부담이 증가<sup>18)</sup>
- 대부분의 OECD 국가들(19개국)이 상속세에 대해 유산취득세형 제도를 운영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유산세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유산세형은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유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반면 유산취득세형은 공동상속의 경우 먼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계산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초과누진세율 적용
  - 국가에 따라 유산취득세 방식과 유산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 간의 과세방식 차이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다른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17)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제도가 없음.

18) 최근 소득세 최고세율 3차례 인상('16년 38%→'17년 40%→'18년 42%→'21년 45%).

&lt;표 4&gt; OECD 회원국의 상속세 과세방식 비교

구 분	국 가
상속세 부과 (19) - 유산취득세 방식	벨기에, 칠레,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상속세 부과 (4) - 유산세 방식	덴마크, 한국, 영국, 미국

자료: 이세진·김준헌,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1.10.

- 30억원의 자산을 직계비속 2인이 상속한 경우, 실제 상속세 부담을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일본의 실효세율이 31%를 넘어 가장 높고, 한국(27%), 캐나다(16%), 미국(0%) 순으로 나타남
  - \* 일본(9.4억원, 31.5%), 한국(8.1억원, 27.1%), 캐나다(4.9억원, 16.3%), 미국 X.
  - 우리나라는 30억원 초과 시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며, 인적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 신고세액공제는 3% 적용됨.<sup>19)</sup> 세법개정안의 세율과 자녀공제(2인, 10억원), 기초공제(2억원)를 적용하면 약 5.3억원으로 계산됨(17.8%)
  - 미국의 상속세는 백만달러 초과 시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통합공제액 1,361만달러(약 187억원)임
  - 일본의 상속세는 6억엔(약 54억원) 초과 시 55%의 세율이 적용되며, 기초공제액 3천만엔에 상속인 1인당 6백만엔을 합한 금액을 공제
  - 자본이득세 과세국가 중 캐나다는 상속 시 약 16%의 실효세율을 보이고, 호주와 스웨덴은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과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상속 시 과세되지 않음
  -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서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포함률 50%를 적용하고 214,369캐나다달러 초과 시 최대 3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19) 상속공제제도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일괄공제, 기업·영농상속공제 등이 있고, 세액공제로 기납부증여세액과 신고세액공제(3%) 등이 있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일괄공제)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함.

구 분	항 목	공제내용	한 도
	기초공제	2억원	
인적 공제	배우자공제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액	30억원 (최소 5억원)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65세 이상)	
	장애인공제	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	5억원	
	기업상속공제	기업 영위기간별 차등적용	300 ~ 600억원 한도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30억원
금융재산 공제	2천만원 이하	순 금융재산가액 전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만원	
	1억원 초과	순금융재산가액의 20%	2억원
	재해손실공제	상속재산 멸실훼손 시 손실가액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10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주택가액 100% 공제	6억원

- 이제는 상속세 문제가 기업인 또는 자산가 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문제가 되었고, 주식시장 등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세율 인하, 공제 확대, 과세방식 전환 등 대폭 완화되어야 함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중산층의 자산 이전 및 형성, 기업의 지속성장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주요 문제점은 ① OECD 2위의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 ② 시대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낮은 공제제도, ③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되는 상속세의 유산세 과세방식임
  - 현행 제도는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24년째 높은 세율과 낮은 공제, 과세표준 구간을 고정하고 있음
    - 최근 대한상의 설문조사 결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71.8%(전반적 24.8%, 부분적 47.0%), 개선 불필요 20.8%였고, 조사대상 중 64%가 직장인으로 상속세가 전국민적인 관심 사임을 방증함
    - 상속세 부과에 불복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 접수가 2019년 221건에서 2022년 307건으로 약 40% 증가했음
  -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과중하기 때문에,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함
  - (개선방안 ①) 세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율 인하 및 추가 공제 확대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법적으로 재산이 축적되었을 거라는 것과 ‘상속은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상속세로 인한 자본유출, 고용감소, 성장둔화 등 경제적 손실을 간과함에 따라 세율은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며, 징벌적인 세금으로 판단됨
    - 2000년 이후 24년간 물가는 80% 상승했으므로 이를 반영한다면, 일괄공제는 약 9억원으로,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약 50억원 초과로 높아져야 하지만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 논의조차 못하고 있음
    - ⇒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 개정안 40%)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5개(개정안 4개)에서 3개로 줄여야 하며, 상속세 자녀공제가 확대되었지만 인적공제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일괄공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야 함
    - OECD 회원국 상속세율 전체 평균은 15%이지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의 평균은 26% 정도이고, 현재 서울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의 시세가 10억원 이상이므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확대해야 함



&lt;표 5&gt;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현행		개정안		제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10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30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30%
30억원 초과	50%				

○ (개선방안 ②)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국가(23개국) 중 대부분(19개국)이 유산취득세형 상속과세제도를 운영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 미국 등 4개국만 유산세형 상속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유산세형은 실제 상속분이 많은 적든 동일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됨
  - 유산세형은 미실현이익을 포함하여 생전에 피상속인이 회피하였던 소득세 부담을 사망 후 정산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현재 과세행정상 소득세를 회피하기는 어려움
  - 유산취득세 방식은 실제 받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능력과의 대응관계에 있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음
  - 한편, 상속세의 보완세인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체계를 취하고 있어 상속·증여세 간 일관된 원칙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유산취득세 제도 도입 시 공동상속인 간의 이해관계 일치로 인한 위장분할이나 상속재산의 분할이 지체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위장분할 재산의 추정규정 도입 및 상속재산 귀속불분명 시 법정지분에 따른 과세제도 도입 등의 법제도 개정이 필요
- ⇒ 응능부담의 공평과세, 공제제도 효과 향상, 상속세와 증여세의 체계 일원화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전환이 바람직할 것임

○ (개선방안 ③)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 도입 필요

-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서 세대 간 자산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자산 처분 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 측면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것임
-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도입했으며, 스웨덴의 경우 세율 70%에 달하던 상속세 문제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자 자본이득세로 전환했음
- 부동산을 상속받은 미망인들은 상속세를 낼 수 없어 하나뿐인 집을 매각해야 되어 사회문제 발생

⇒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자산이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가 도입되어야 함

### 3) 법인 기부 활성화

□ 기부 관련 세법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확대한 것 뿐이며, 법인 기부금이나 공익법인 관련 세제 부분 개정은 없음

□ OECD의 자료<sup>20)</sup>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공익활동을 증대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한 시점이지만, 그 재원인 ‘기부’가 부족하므로 기부 촉진을 위해 현행의 규제지향 제도는 개선되어야 함

○ 국제 자선단체인 CAF가 발표한 ‘2023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를 차지했음<sup>21)</sup>

- GDP 대비 민간기부 비중은 2011년 0.79%에서 2021년 0.75%로 0.04%p 감소해 규모 면에서도 정체 상태이고, 통계청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감소해 기부가 부족한 상황임

- 자선단체<sup>22)</sup>의 수입원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자선기부(개인, 법인 포함)의 비중이 적으며 회비나 수익(수수료)의 비중이 높음

<표 6> 자선단체의 수입원 비교 (%)

구분	자선기부	회비, 수익	정부보조금
호주	7	63	31
오스트리아	6	44	50
일본	3	52	45
<b>한국</b>	<b>4</b>	<b>71</b>	<b>24</b>
스웨덴	9	62	29
영국	9	45	47
미국	13	57	31

자료: OECD, Taxation and Philanthropy, Tax Policy Studies, 2020.

20) OECD, Taxation and Philanthropy, Tax Policy Studies, 2020.

21) Charities Aid Foundation, “CAF World Giving Index 2023”, 2023.

22) 국내세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자선단체임.

- 기부금 신고법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의 기부금 총액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7년까지 감소하던 법인 기부금은 2018년부터 증가했으며, 증가와 감소를 이어오다 2022년 신고법인 수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반면 기부금은 16.4%나 크게 감소했음

&lt;표 7&gt; 법인의 기부금 신고 현황

구 분	신고법인 수	증감률 (%)	기부금 (백만원)	증감률 (%)
2015년	591,694	-	4,778,202	-
2016년	645,061	9.0	4,647,156	-2.7
2017년	695,445	7.8	4,632,262	-0.3
2018년	740,215	6.4	5,096,288	10.0
2019년	787,438	6.4	5,287,634	3.8
2020년	838,008	6.4	5,154,668	-2.5
2021년	906,325	8.2	5,258,667	2.0
2022년	982,456	8.4	<b>4,398,220</b>	<b>-16.4</b>

자료: 국세통계포탈.

- 공익법인의 가동 법인 수는 최대였던 2020년 4만 1천여개에서 2022년 3만 9천여개로 5.5% 감소했고, 국세청에 서류를 공시하는 공시 법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계속된 공익법인 주식규제 강화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출자 평균지분율이 감소,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최근 5년(2018~2022년) 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는 소폭 증가(2018년 66개 → 2022년 79개)하는데 그쳤으며,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오히려 감소(1.25% → 1.10%)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가 수혜자인 공익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출연재산의 감소는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고 곧 ‘사회적 비용’ 이 될 것임

&lt;표 8&gt; 공익법인 현황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가동 법인 수	34,843	39,897	41,544	37,556	39,273
공시 법인 수	9,403	9,860	10,953	11,203	11,557

자료: 국세통계포탈(tasis.nts.go.kr).

&lt;표 9&gt;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출자 현황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열출자 공익법인 수	66	65	68	69	79
(공익법인 보유집단 수)	37	36	38	37	45
피출자 계열회사 수	122	124	128	125	142
평균지분율(%)	1.25	1.24	1.25	1.16	1.1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2019~2022년.

-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목적 지출액은 5.9조원으로 2018년(5.2조원) 이후 4년간 12.7%(연평균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기간 중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지출<sup>23)</sup> 증가율인 35.7%(연평균 7.9%)에 비해 약 1/3 수준에 불과한 증가율이었음

- 공익법인의 수익 중 주식 배당, 이자 등이 85.1%를 차지하며, 공익법인의 사회공헌지출을 늘리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 등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주식출연 규제가 해소될 필요

<표 10> 기업집단 공익법인 공익목적 지출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18년	2022년	증감률
총계	5.24	5.90	12.7%
소계	4.98	5.67	13.8%
사업수행비용	4.76	5.44	14.2%
일반관리비용	0.22	0.24	5.4%
모금비용	0.00	0.00	-21.8%
기타비용	-	-	-
사업외비용	0.11	0.03	-76.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0.14	0.21	42.8%

\*주: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 부문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적립금

2) 모금비용은 백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0.0으로 표기

자료: 한국경제인협회 보도자료,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사업현황 분석”, 2024.6.5.

- 현행 세법상 기부금을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과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해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세제지원을 달리하고,<sup>24)</sup> 상속세및증여세법<sup>25)</sup>상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sup>26)</sup>

23) 매출 500대 기업 사회공헌지출: 2조 6,061억원('18) → 3조 5,367억원('22).

24)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25) 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26)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 제4항. 제48조 제1항.

- 개인이 공익목적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15~40%<sup>27)</sup>)를 적용하고 있고,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10~5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손금 산입함
  -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있음. 2005년까지는 소득공제의 한도가 100%이었으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은 75%, 2009년부터는 50%로 점차 축소되었음
- ‘기부금’은 법인이 그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하며,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 한도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특례기부금, 소득금액의 10% 한도에서 손금 인정되는 일반기부금 및 기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함
  - ‘특례기부금’은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의 가액으로 소득의 50% 한도<sup>28)</sup>로 손금(필요경비) 산입되고,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sup>29)</sup>으로 소득의 10% 한도로 손금(필요경비) 산입됨<sup>30)</sup>
-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조세지원을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의무사항을 사후관리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함
  -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자 특수관계인의 이사취임 제한, 특정기업 광고, 자기내부거래 등 준수사항도 있음
  - 주식의 취득 및 보유 시에는 아래 표와 같이 한도를 지켜야 하며, 2017년 개정을 통해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과 관련이 있는 공익법인을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해서 의결권주식의 5% 초과분은 과세하도록 강화했음<sup>31)</sup>

27) 1천만원 초과: 30%, 3천만원 초과: 40%(‘24.1.1.~’24.12.31.), 정치자금 기부금 3천만원 초과: 25%.

28) 한도액 = [(차가감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이월결손금] × 50/100.

29) ① 다음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② 다음의 기부금

-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학교의 장,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상 기부금

30) 손금산입 범위액 =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이월결손금) × 10%.

&lt;표 11&gt; 공익법인의 주식의 취득 및 보유 시 준수사항

구 분	판정기준	적용대상	한도	의무위반 시 제재	
출연 · 취득	출연받을 때 또는 출연재산으로 취득 시 지분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있는 경우 또는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요건 불충족한 경우	5%	초과분 증여세 부과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요건 충족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10%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한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법인		20%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 주식으로 주무관청 승인받음		-
			10% 초과 출연분 3년 이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매각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
보유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시 총재산가액 대비 비율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요건 불충족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30%	초과보유분 가산세 부과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요건 충족한 경우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 이행		50%
			-		

자료: 저자 정리.

-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공시, 회계기준 적용, 기부금영수증 등 관련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 등을 부담함

- 2000년대 이후 기부금 세제지원은 축소되고 공익법인 규제는 강화되는 등 기부 관련 소극적 조세정책이 이어져 오고 있어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공제 확대, 공익법인 관련 세제 개선 등이 필요

31) 공익법인 주식출연 제한 규정의 연혁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내용
~ 1990	규제 없음
1991 ~ 1993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20%
1994 ~ 2007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
2008 ~ 2010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 다만, 2007년 말 법률 개정을 통해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10%로 완화
2011 ~ 2017.7	성실공익법인 등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더라도 3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면 그 초과부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주식취득 및 보유 제한을 완화
2017.7 ~ 2017.1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10%에서 5%로 하향 조정
2018.1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출연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는 10%에서 20%로 상향조정
2021.1 ~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구분이 폐지되고, 공익법인 주식보유 기본한도를 10%로 하되, 위반 시 5% 한도

- (개선방안 ①) 법인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 한도를 특례기부금 100%와 일반기부금 30%로 각각 상향해야 함
  - 2006년 법정기부금 손금한도 축소(100% → 50%) 이후 한도 초과분에 대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고, 법인 기부금 규모가 축소될 우려
  - 실제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법인 기부금 규모는 정체되었고, 2022년에는 크게 감소했음('18년 5.1조원→'19년 5.3조원→'20년 5.1조원→'21년 5.3조원→'22년 4.4조원)
  -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은 소득의 100%, 캐나다는 75%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음
- (개선방안 ②) '기부 및 기업승계의 활성화' 를 위해 기부 여력과 재원이 큰 기업집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야 함
  - 우리나라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 규제 핵심은 주식출자 및 보유에 대한 규제로 판단되며, 이 때문에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이 어려운 상황
  - 현행 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0%, 20%를 초과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증여세로 과세하고,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 중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식을 30~50% 초과 보유하는 경우 그 초과주식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
  - 계속된 공익법인 주식규제 강화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출자 평균지분율이 감소,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큼
  - 또한, 기부 등 공익활동이 필요한 현재 시점에서 공익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세제상 규제는 해소될 필요가 있고, 현행 공익법인세제는 주식출연 자체에 대한 제한보다는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수행 제고라는 관점으로 방향을 수정할 필요<sup>32)</sup>
  -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 혜택을 기업과 공익법인에게 허용하는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출연하여 사회적으로 유용한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된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ESG 측면에서도 기업이 지역사회와 국가가 당면한 사회과제를 찾아내어 해결하는 사회 혁신 영역(S)에서 기업 공익재단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필요한 상황인데,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및 보유 제한은 그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
  - 미국은 발행주식의 20%, 일본은 50% 범위 내에서 인정하므로, 미국과 같이 상속·증여세 면제비용을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2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32) 한편, 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이 기업집단의 경제적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없음(오윤,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과세에 관한 고찰", 「조세법연구」 28-1, 한국세법학회, 2022.6.).

- 발렌베리 사례<sup>33)</sup>처럼 사회적 대타협 선행 후, 경영권 승계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익법인의 활발한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환원이 필요할 것이고,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면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sup>34)</sup>

###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2019~2022년.

관계부처 합동, “역동경제 로드맵”, 2024.7.3.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2024.7.25..

오 윤,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과세에 관한 고찰”, 「조세법연구」 28-1, 한국세법학회, 2022.6.

이세진·김준현,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1.10.

임동원,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R&D 세제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24.7.

한국경제연구원,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실효성 분석” 2022.10.

한국경제인협회 보도자료,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사업현황 분석”, 2024.6.5..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

Charities Aid Foundation, “CAF World Giving Index 2023”, 2023.

OECD, Taxation and Philanthropy, Tax Policy Studies, 2020.

33) 지주회사는 공익재단을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고, 승계는 공익재단을 통해 이루어져 상속세 부담 완화, 공익재단을 통한 활발한 사회기여활동으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

34) 공익법인의 공익사업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출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면서, 부수적으로 경영권 유지의 이익을 가지는 것까지 문제시할 필요가 없음.